

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350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무조례의 보완을 통하여
-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
-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
- 1)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나. 특별휴가 조정(안 제23조, 별표 3)

- 1) 경조사 휴가일수를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

- 1) 지방공무원법 제51조
- 2)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(대통령령 제20741호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(2008. 9. 26 ~ 10. 15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 (행정안전부, 강원도)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친절·공정”을 “친절”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항중 “공무원증규칙(총리령)”을 “「공무원증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3조제1항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7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3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입 양	자녀를 입양하는 본인	14

※ 비 고

-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-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<u>친절, 공정</u>하고 신속,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 (친절·공정) ①----- ----- ----- <u>친절</u> 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공무원은 <u>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
제12조 (복장 등) ① (생 략)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<u>공무원증규칙(총리 령)</u>을 준용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에는 공무원의 신분증을 전자카드 화 할 수 있다.	제12조 (복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「<u>공무원증규 칙</u>」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별표3>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대 상</th><th>일수</th></tr><tr><td>결혼</td><td>본인</td><td>7</td></tr><tr><td>출산</td><td>배우자</td><td>3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사망</td>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<td>5</td></tr><tr>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<td>2</td></tr><tr>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<td>2</td></tr><tr><td>입양</td><td>자녀를 입양하는 본인</td><td>14</td></tr></table> ※ 비 고 •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 •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본인	7	출산	배우자	3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	입양	자녀를 입양하는 본인	14	<별표3>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대 상</th><th>일수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결혼</td><td>본인</td><td>7</td></tr><tr><td>자녀</td><td>1</td></tr><tr>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td><td>1</td></tr><tr><td>출산</td><td>배우자</td><td>3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사망</td>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<td>5</td></tr><tr>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<td>3</td></tr><tr>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<td>3</td></tr><tr>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</td><td>3</td></tr><tr><td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<td>3</td></tr><tr><td>탈상</td>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<td>1</td></tr><tr><td>입양</td><td>자녀를 입양하는 본인</td><td>14</td></tr></table> ※ 비 고 •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 •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본인	7	자녀	1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출산	배우자	3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	3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	입양	자녀를 입양하는 본인	14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양	자녀를 입양하는 본인	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양	자녀를 입양하는 본인	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1조

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제1항

제7조의3 (특별휴가)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다만,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 : 별첨 (행정안전부, 강원도)

강원도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 알림

1.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-864(2008. 8. 9)호에 의거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 방지를 위해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

2. 각 시·군에서는 동 개정내용을 복무조례에 반드시 반영(개정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
강 원 도 지 사

수신자 춘천시(총무과장), 원주시(자치행정과장), 강릉시(행정지원과장), 동해시(행정지원과장), 태백시(자치행정과장), 속초시(자치행정과장), 삼척시(총무과장), 홍천군(자치행정과장), 횡성군(자치행정과장), 영월군(자치행정과장), 평창군(자치행정과장), 정선군(자치행정과장), 철원군(자치행정과장), 화천군(자치행정과장), 양구군(자치행정과장), 인제군(자치행정과장), 고성군(자치행정과장), 양양군(자치행정과장)

주무관

지방행정사무관

총무과장

협조자

시행 총무과-20424 (2008.09.11.) 접수 자치행정과-11533 (2008.09.11.)

우 200-700 강원 춘천시 중앙로 1(봉의동 15) 총무과 / www.provin.gangwon.kr

전화 033-249-2542 /전송 033-249-4022 / cjh77@gwd.go.kr / 공개

지방공무원 복무조례 (표준안) 일부개정 (안)

2008. 9.

행 정 안 전 부
[지방공무원과]

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(안)

1. 개정배경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
-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
-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

2. 개정내용

□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
-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3. 조치사항

- 「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」 개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에 반영

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

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·공정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5조 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